

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

2025년 01월 01일 부터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.

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(기존 입소자 2.3명당 1명 -> 개선 입소자 2.1명당 1명)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 인상 적용(7.37%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시설이용료 자부담 산출내역]

* 원단위 절사

구 분		1일당 수가(100%)	30일 기준 (침실료 제외)	
1 등급	1일당 수가	90,450	본인부담액	본인부담총액(식대, 간식포함)
	본인부담액 (20%)	18,090	542,700	977,700
	본인부담액 (12%)	10,854	325,620	760,620
	본인부담액 (8%)	7,236	217,080	652,080
	비급여 (식대, 간식)	14,500	435,000	
2 등급	1일당 수가	83,910	본인부담액	본인부담총액(식대, 간식포함)
	본인부담액 (20%)	16,782	503,460	938,460
	본인부담액 (12%)	10,069	302,076	737,080
	본인부담액 (8%)	6,713	201,384	636,380
	비급여 (식대, 간식)	14,500	435,000	
3 등급	1일당 수가	79,240	본인부담액	본인부담총액(식대, 간식포함)
	본인부담액 (20%)	15,848	475,440	910,440
	본인부담액 (12%)	9,509	285,264	720,260
	본인부담액 (8%)	6,339	190,176	625,180
	비급여 (식대, 간식)	14,500	435,000	

※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합니다.

(1회당 최대 10일, 1개월에 15일까지만 적용됩니다)

[비급여 자부담 산출내역]

비급여 (필수항목)	비 고
식사비용 12,900원 (1일)	1일 3회 제공 (4,300원 * 3식)
간식비용 1,600원 (1일)	1일 2회 제공 (800원 * 2회)
1 인 실 150,000원 (30일 기준)	1일 5,000원
2 인 실 90,000원 (30일 기준)	1일 3,000원